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 저를 포함하여 11인의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표창은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 및 자치구, 개인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서울시장은 2014년 6,703건, 2015년 7,960건, 2016년 4,530건의 시민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표창을 분실하거나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 민간인 및 민간단체 재교부 요청 건은 97건(2014년 40건, 2015년 28건, 2016년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재교부 요청에 대해서 사실확인서로 갈음하여 표창 분실과 파손에 대한 재교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표창의 재교부와 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째,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재교부하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둘 째,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기록부에 재교부 사실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통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